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000호)	조경태의원	2024.7.19.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0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 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2.16.)상정, 축조심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667호)	서천호의원	2025.7.23.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5.08.26.)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 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2.16.)상정, 축조심사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03.19.)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3.)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u>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u>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 ① ----- ----- ----- ----- ----- ----- <u>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u>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u>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u>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 <u>유출</u> <u>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u> ----- ----- ----- -----.